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3 . 6 . 1 5 . (목)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70
제출일자 : 2023. 5. 31.
회부일자 : 2023. 6. 2.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대진 의원 외 26명

2. 제안 이유

- 경상북도의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시장·군수가 「수도법」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붙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붙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맑은물정책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년 6월 5일 ~ 6월 10일
- 관계법령 : 「수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2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이는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고, 시장·군수의 연차별 절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¹⁾인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 제2항은 절수설비의 의무설치 대상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물 절약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과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등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이 조문 검토 결과, 조례안의 법규형식, 내용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 의견

-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²⁾로 수자원 여건이 열악하고,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각하며, 가뭄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물 절약과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2001년부터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수도법」 개정(2022. 2.18)으로 절수설비 등의 보급 확대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등을 통한 물 절약 촉진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이미 절수설비

2) 국제인구행동연구소(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PAI)는 전 세계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국토면적에 떨어지는 연간 강수량 중 증발산 등의 손실을 제외한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눈값)을 기준으로 물 기근 국가(1,000㎥ 미만), 물 스트레스 국가(1,000㎥ 이상, 1,700㎥ 미만), 물 풍요 국가(1,700㎥ 이상)로 분류하고 있음.

- 등의 설치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³⁾.
- 이에, 본 조례안은 경북도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의무 대상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경상북도 행정구역별 기축주택 현황

붙임 2. 경상북도 행정구역별 기축주택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계획

3) 타 시·도의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경상남도(2017.8.3.), 충청남도(2017.9.20.), 세종특별자치시(2017.9.29.), 강원도(2019.1.4.), 전라북도(2020.5.29.), 경기도(2020.7.15.), 전라남도(2020.8.6.), 인천광역시(2020.11.9.), 제주특별자치도(2021.12.31.), 대구광역시(2022.12.30.), 울산광역시(2023.4.6.) 등 11개 시·도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붙임 1

경상북도 행정구역별 기축주택 현황

(단위 : 세대)

행정구역	기축주택	행정구역	기축주택
경상북도 (누계)	943,498	의성군	28,406
포항시	163,532	청송군	12,756
경주시	97,715	영양군	8,365
김천시	48,360	영덕군	19,391
안동시	60,077	청도군	18,955
구미시	112,223	고령군	13,772
영주시	42,561	성주군	18,362
영천시	42,039	칠곡군	34,921
상주시	43,180	예천군	21,175
문경시	30,188	봉화군	15,151
경산시	72,047	울진군	24,207
군위군	12,271	울릉군	3,844

자료 : 경상북도, 2018 통계연보

붙임 2**경상북도 행정구역별 기축주택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계획**

(단위 : 세대)

행정구역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경상북도	5,661	5,661	5,661	5,661	5,661
포항시	981	981	981	981	981
경주시	586	586	586	586	586
김천시	290	290	290	290	290
안동시	360	360	360	360	360
구미시	673	673	673	673	673
영주시	255	255	255	255	255
영천시	252	252	252	252	252
상주시	259	259	259	259	259
문경시	181	181	181	181	181
경산시	432	432	432	432	432
군위군	74	74	74	74	74
의성군	170	170	170	170	170
청송군	77	77	77	77	77
영양군	50	50	50	50	50
영덕군	116	116	116	116	116
청도군	114	114	114	114	114
고령군	83	83	83	83	83
성주군	110	110	110	110	110
칠곡군	210	210	210	210	210
예천군	127	127	127	127	127
봉화군	91	91	91	91	91
울진군	145	145	145	145	145
울릉군	23	23	23	23	23